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김광수 의원 외 9명

나. 의안번호 : 제656호

다. 발의일자 : 2019. 5. 22

라. 회부일자 : 2019. 5. 24

2. 제 안 사 유

-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 제한 대상에 총중량 2.5톤 이상의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가 해당되고 있지만, 2019년 6월 1일부터는 총중량 2.5톤 미만 자동차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게 됨.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등 자동차 중량 및 사용연료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바, 이를 개선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조직개편에 따라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차량공해저감과장을 추가함
(안 제10조제3항)
- 나. 총중량 2.5톤 미만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명령과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다.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 라. 띄어쓰기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4. 참 고 사 항

- 가.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중 2.5톤 미만 자동차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휘발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15조)

- 현행 조례 제15조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를 최초등록일 기준 2005년 12월 31일 이전 경유자동차와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자동차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자동차로 규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의 저공해 조치를 명령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저공해 조치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한편, 현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일부터는 총중량 2.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도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15조와 같이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경유자동차 구분을 최초

등록일이나 출고일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기준(배출가스 5등급¹⁾)으로 하여 단순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또한, 비상저감조치시 총중량 2.5톤 미만의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에 대해서도 운행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2.5톤 미만의 경유자동차까지 포함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자동차 총중량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확대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한편, 총중량 2.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자동차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 포함되면 저공해 조치 보조금 지원 대상은 증가(약 9만대)하게 되겠지만, 금번 추경편성으로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예산이 904억 9천7백만원 증액²⁾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물량 증가에 따른 예산부족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안 제19조제1항)

- 현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Euro-3 경유자동차, Euro-2 휘발유·가스자동차가 해당되며, 비상저감조치시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5등급 경유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19조제1항과 같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경유자동차

1)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서 5등급 차량은 Euro-2 휘발유·가스차량, Euro-3 경유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2) 저감장치 부착 등 목표 대수: 11,973대(기존) → 26,973대(추경반영)
조기폐차 목표 대수 : 30,000대(기존) → 48,000대(추경반영)

뿐만 아니라 휘발유·가스자동차를 포함한 5등급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사용연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공해 사업 확대를 통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조직개편 사항 반영(안 제10조제3항)

- 안 제10조제3항은 CNG자동차 재정지원 대상, 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차량공해저감과장을 추가하는 것이며, 차량공해저감과장 추가에 따라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수는 12명으로 증가하게 됨.

그러나 현행 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재정지원심의회를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차량공해저감과가 신설됨에 따라 CNG자동차 보급에 관한 업무가 대기정책과에서 차량공해저감과로 이관된 바 있음.

따라서 CNG자동차 보급 업무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은 재정지원심의회 위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생략) ③ _____ 위원은 <u>차량공해저감과장·대기정책과장·환경</u> <u>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u> _____.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개정 안과 같음) ③ _____ 위원은 <u>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u> <u>정책과장</u> _____.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

- 시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띄어쓰기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견은 없음.

- 기타 동 조례안 제3장(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은 제15조에서 제20조 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5등급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19조는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경유·휘발유·가스 포함)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제3장 제목을 휘발유·가스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운행경유 자동차 등 저공해 촉진 및 지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장 <u>운행경유차</u>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제3장 <u>운행경유자동차 등</u>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참고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1. ~ 15. (생략)

16. “저공해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를 말한다.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